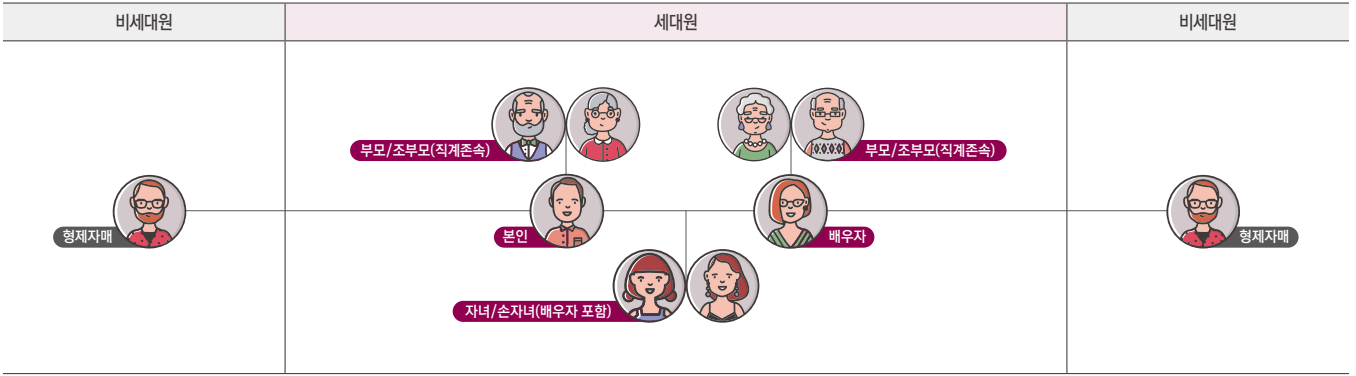


청약 가점제는?

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, 부양가족수,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 점수를 합산하여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

■ 무주택자 여부

- 무주택자 판단기준 :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준 (분양권 등 포함)
 - 청약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
 - 세대분리 된 배우자는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
- 주택청약 시 세대원 판단기준 (참고)



■ 무주택기간산정

- 청약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: 청약자의 연령기준 만 30세 이후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을 '만' 나이를 기준으로 산정
 -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
 - 청약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, 주택을 처분한 날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

과거 주택 여부	30세 이전 혼인 여부	무주택기간		결과		
(본인 및 배우자) 주택 소유한 적 없는 경우	(본인)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	만 30세	입주자모집공고일	(본인)만 30세가 된 날 ~ 입주자 모집공고일		
	(본인)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	혼인신고일	만 30세	입주자모집공고일	혼인신고일 ~ 입주자 모집공고일	
(본인 및 배우자) 주택 소유한 적 있는 경우	(본인)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	만 30세	무주택자 된 날	입주자모집공고일	(본인)만 30세가 된 날과 (본인 및 배우자)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날 ~ 입주자 모집공고일	
		무주택자 된 날	만 30세	입주자모집공고일		
	(본인)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	혼인신고일	무주택자 된 날	만 30세	입주자모집공고일	혼인신고일과(본인 및 배우자)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날 ~ 입주자 모집공고일
		무주택자 된날	혼인신고일	만 30세	입주자모집공고일	

■ 부양가족수 산정

-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다음의 세대원으로 합니다. (본인은 제외)
 - 배우자(세대분리 배우자 포함)
 - 직계존속(부모·조부모,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
- ※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주로서 해당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만 3년 이상 계속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
- ※ 피부양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제6호(60세 이상 직계존속 주택 소유)가 적용되지 않아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됨
- ※ 직계비속(자녀·손자녀) 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,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
 -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청약자 또는 그 배우자와 최근 1년 이상 계속해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